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5. 7. 1(수) 총 6매(본문2, 붙임4)	
담당 부서	기술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정태화, 사무관 정양기, 주무관 김종현 • ☎ (044) 201-3557, 3553
보 도 일 시		2015년 7월 2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건설공사 사후평가,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

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대가 신설…불공정 관행 해소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유일호)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**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**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**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**을 **유도**할 계획이다.

□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**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추어 산정**되는 경우가 많아,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**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**하였다.

○ 또한,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**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**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어 **예산수립에 어려움**이 있어 왔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, 금번에 「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」을 개정하여 **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**을 신설하였다.

○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선진외국에서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(글로벌스탠다드)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.

○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은 **사업별 특성**을 고려하여 평가 수행에 요구되는 **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**하고, 시설물의 종류, 공사규모(사업연장 및 면적) 및 발주유형(단독발주, 통합발주) 등을 반영하여 **소요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출**하도록 하였다.

□ 금번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으로 업계는 **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**를 받을 수 있게 되고, 발주기관에서는 원활한 **사후평가 업무수행이** 기대된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정양기 사무관(☎ 044-201-355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소요인력 산정기준(별표7)**

(1) 선형공사(도로 및 철도공사)

①소요인력 기준

기본업무 내용	등급별 소요인력				비고
	특 급	고 급	중 급	초 급	
1. 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	2.8	4.4	8.8	30.0	
2. 사업수행성과 분석	2.2	4.0	16.0	36.0	
3.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비교·분석	6.6	13.4	25.0	48.0	
4.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	2.0	4.0	6.0	10.0	
5. 주민호응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·분석	5.6	11.4	22.0	52.0	
6. 건설공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	5.4	10.0	24.0	38.0	
7. 종합평가	1.6	3.4	7.0	10.0	
8. 성과품(보고서 등) 작성	1.2	4.2	6.0	12.0	
소 계	27.4	54.8	114.8	236	

②보정계수

㉮ 거리 보정계수

- 다음 식과 같이 거리보정계수를 적용한다. 단, 사업연장 10km이하는 10km를, 150km이상은 150km를 적용한다.

$$\text{거리보정계수} = \left(\frac{\text{사업연장}}{45km}\right)$$

㉯ 평가분야 보정계수

- 공사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보정계수를 적용한다.

구분	일반도로 (국도, 지방도, 시군구도)	고속국도 복선철도	단선철도
평가분야 보정계수	1.0	0.75	0.5

㉰ 통합발주 보정계수

- 2개 이상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공사를 통합하여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합발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.

구분	단독발주	2건이상
통합발주 보정계수	1.0	1.1

(2) 비선형공사 Ⅰ(주택단지 및 산업단지공사)

①소요인력 기준

기본업무 내용	등급별 소요인력				비고
	특 급	고 급	중 급	초 급	
1. 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	1.4	2.2	4.4	15.0	
2. 사업수행성과 분석	1.1	2.0	8.0	18.0	
3.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비교·분석	3.3	6.7	12.5	24.0	
4.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	1.0	2.0	3.0	5.0	
5. 주민호응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·분석	2.8	5.7	11.0	26.0	
6. 건설공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	2.7	5.0	12.0	19.0	
7. 종합평가	0.8	1.7	3.5	5.0	
8. 성과품(보고서 등) 작성	0.6	2.1	3.0	6.0	
소 계	13.7	27.4	57.4	118.0	

②보정계수

㉮ 면적 보정계수

- 주택(산업)단지는 다음 식과 같이 면적보정계수를 적용한다. 단, 사업면적 70만m2 이하는 70만m2, 3,000만m2이상은 3,000만m2 적용한다.

$$\text{면적보정계수} = \left(\frac{\text{사업면적}}{\text{기준면적}}\right)^{0.6}$$

- 주택(산업)단지 사업면적은 사업지구 총 사업면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동일사업이라도 지구경계 및 생활권의 분리, 공구별 공사의 진행의 차이 등으로 지구특성을 반영하여 사후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구별로 사후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.
- 기준면적: 주택단지(100만m2), 산업단지(330만m2)

㉯ 통합발주 보정계수

- 2개 이상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공사를 통합하여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합발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.

구분	단독발주	2건 이상	
		동일지역 공사	타 지역 공사
통합발주 보정계수	1.0	0.7	1.0

※ 단지공사와 연결된 도로, 도시기반시설물 공사의 경우 동일 시군구가 아니라도 동일지역으로 본다.

(3) 비선형공사 II(공항, 항만, 댐 및 상하수도공사)

①소요인력 기준

기본업무 내용	등급별 소요인력				비고
	특 급	고 급	중 급	초 급	
1. 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	1.4	2.2	4.4	15.0	
2. 사업수행성과 분석	1.1	2.0	8.0	18.0	
3.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비교·분석	3.3	6.7	12.5	24.0	
4.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	1.0	2.0	3.0	5.0	
5. 주민호응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·분석	2.8	5.7	11.0	26.0	
6. 건설공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	2.7	5.0	12.0	19.0	
7. 종합평가	0.8	1.7	3.5	5.0	
8. 성과품(보고서 등) 작성	0.6	2.1	3.0	6.0	
소 계	13.7	27.4	57.4	118.0	

②보정계수

㉮ 면적 보정계수

- 다음 식과 같이 면적보정계수를 적용한다. 단, 사업면적 35만m2 이하는 35만m2, 600만m2이상은 600만m2 적용한다.

$$\text{면적보정계수} = \left(\frac{\text{사업면적}}{600{,}000m^2}\right)^{0.6}$$

㉯ 평가분야 보정계수

구분	공항	항만, 댐 및 상하수도
평가분야 보정계수	1.3	1.0

㉰ 통합발주 보정계수

- 2개 이상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공사를 통합하여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합발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.

구분	단독발주	2건이상
통합발주 보정계수	1.0	1.1

(4) 기타공사

①소요인력 기준

기본업무 내용	등급별 소요인력				비고
	특 급	고 급	중 급	초 급	
1. 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	1.4	2.2	4.4	15.0	
2. 사업수행성과 분석	1.1	2.0	8.0	18.0	
3.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비교·분석	3.3	6.7	12.5	24.0	
4.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	1.0	2.0	3.0	5.0	
5. 주민호응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·분석	2.8	5.7	11.0	26.0	
6. 건설공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	2.7	5.0	12.0	19.0	
7. 종합평가	0.8	1.7	3.5	5.0	
8. 성과품(보고서 등) 작성	0.6	2.1	3.0	6.0	
소 계	13.7	27.4	57.4	118.0	

②보정계수

㉮ 공사규모 보정계수

- 다음 식과 같이 공사규모(공사비) 보정계수를 적용한다. 단, 총공사비 500억원 이하는 500억원을, 2조원 이상은 2조원을 적용한다.

$$\text{공사규모 보정계수} = 0.3706 + [2 \times 10^{-6} \times \text{총공사비(백만원)}]$$

㉯ 통합발주 보정계수

- 2개 이상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공사를 통합하여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합발주 보정계수를 적용한다.

구분	단독발주	2건이상
통합발주 보정계수	1.0	1.1